

중국의 기술이전 제도

1. 기술의 범위와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의 범위

- 기술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이란 특허권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발명특허권, 실용신안특허권, 의장특허권 등) 뿐 아니라 설계도, 설명서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제조과정, 제조방법, 제품설계 및 품질관리 관련 전문기술과 기술 노하우와 기술 용역을 포함
- 업무 절차, 관리방식의 노하우 등은 합자나 합작투자의 조건은 될 수 있으나, 현재 관련 규정 미비로 출자는 불가능

□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방법은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무상이전은 경제적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기술 이전이며, 유상이전은 기술 가격(기술료)을 산정하여 기술을 거래하거나 해당 기술가치만큼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출자하는 방법
- 무상이전은 경제적 보상을 수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 자료의 제공은 물론 훈련, 생산지도, 품질보증 등 기술제공측의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 기술이전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벌금 및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경우 발생 가능
- 유상이전의 기술 출자는 기업의 핵심 제조기술 등의 출자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자 한도는 총 납입자본금의 20%(회사법(公司法) 24조)
- 종전에는 주로 플랜트 거래와 함께 설비의 운전 및 정비기술 등의 무상이전이 대중을 이루었으나 최근 전자, 통신 등 IT관련 기술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랜트 거래 없는 순수한 유상 기술이전 비중 확대 예상

2. 기술계약서 작성

□ 기술이전계약서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기술의 개선 내용에 대한 상호고지의 의무여부, 제 3자에 대한 기술의 재이전 허가여부, 이전기술의 표준과 검증방법, 기술료 및 지불방법(입문비(入門費) 또는 초부비(初付費) 선납 여부 등)은 반드시 명시

<표 1> 기술계약서의 기본내용

구분	내용
①계약서의 명칭	기술이전, 기술출자, 기술자문, 기술중개 계약서 등 명칭 표시
②기술내용, 범위, 조건	이전기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③기술표준, 기술이전 기한, 리스크 및 책임분담	총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10년을 초과할 경우는 별도 허가 필요. 통상 기술이전은 1~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 전달과 교육을 통하여 이전을 개시하며, 출자의 경우에는 현금 출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기술이전을 완료하도록 계약
④보안유지, 귀속 및 배당	중국은 기술제공측으로 하여금 이전 기술의 합법적 소유자임과 동시에 기술이전 절차와 완료, 기술이전의 목표(일정 기술수준의 제품 생산 등) 달성을 보장하는 보증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음. 경우에 따라 기술도입, 생산, 판매 활동 가운데 발생한 제 3자 권리 침해에 의한 손실까지도 보상 요구
⑤기술료 및 지불방법	일시불(lump sum) 방식, 분할지급(Royalty) 방식, 혼합방식 중 선택
⑥손해배상 규정 및 배상액 계산방법	계약위반 사항 명시 및 배상액 한도 설정 필요
⑦분쟁 해결방법	중재는 계약서상 중재 조항이 있거나, 양측의 서면 합의서가 있는 경우 가능
⑧용어의 해석	계약법(合同法)에 따른 공식용어 사용

자료 : 필자작성

- 계약서내에 다음 내용의 조항 삽입은 금지
 - 기술용역, 원자재, 설비, 상품에 대한 구매 요구 등 해당 기술도입과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 요구
 - 원자재, 부속품의 자유로운 구입 제한
 - 기술개선 제한
 -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관계의 기술도입 제한
 - 상품의 종류, 생산량, 매출가격 등을 제한
 - 매출처 및 수출시장 제한
 - 계약만기 이후 해당기술의 계속사용 금지
 - 실효된 기술이나 특허에 대해 보상 요구
- ※ 기술이전측이 독점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술도입측의 시장 제한이 가능하며 계약만기 이후 해당기술의 계속 사용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최근 기술이전과 관련한 중국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3. 기술이전 및 등록 절차

□ 기술이전 절차

<표 2> 기술이전 절차

구분	내용
①기술이전 방식 결정	무상이전, 유상이전, 출자 여부
②기술가치 산정	공신력있는 전문 평가기관 이용
③기술료 지급, 분쟁 해결 방법 합의	지급방식 결정 및 중재조항 삽입여부 등
④계약체결	기술이전이 합작(자)투자와 병행될 경우에는 합작(자)투자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체결하거나 별도 체결도 가능
⑤기술계약 인정등기	모든 기술계약서는 과학기술부에 등기
⑥관련 심사기관 신고 또는 인가취득	대외 기술거래는 대외경제무역부 특허, 상표관련 계약은 특허국, 상표국
⑦관련기관 신고	기술출자나 기술도입을 통한 합작(자) 조건 변경 등은 정관개정을 통해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 등기 변경 세금과 관련 세무국에 신고

자료 : 필자작성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된 기술을 이전하거나 도입할 경우에는 기술계약 체결 전 대외경제무역부의 '기술수입허가의향서' 또는 '기술수출허가의향서' 취득하고, 계약체결 후 재심사를 통한 실제 허가서 취득

□ 기술계약서의 등록(등기)

- 모든 기술관련 계약서는 과학기술부에 등록(기술계약 인정 등기, 2000. 2. 16 시행)해야 하며, 미등기된 기술계약 관련 사업은 대출, 세금우대, 국가 장려금 등의 수혜 불가
- 계약 체결 후 등기신청 주체의 소재지에서 1회 등기하며 신청서와 계약서 원본 및 부속서류 일체 제출
 - 등기신청 주체는 기술개발계약은 연구개발 주체, 기술이전계약은 기술제공측, 기술훈련계약은 교육제공측, 기술용역계약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 기술중개계약은 계약 중개인이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과학기술부문은 서류 접수후 30일 이내에 기술가격을 명시한 등기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부적합 신청건의 관련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
- 등기신청이 거부된 기술계약에 대해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행정재심의법(행정부령)'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상관리국이나 세무국 등 기타 정부기관도 기술계약과 관련된 각종 우대혜택 부여여부를 심사하면서 직접 재심의 요청 가능
- 계약 내용중 일부를 수정, 양도, 삭제, 취소하였을 때는 경우에 따라 기술가치의 재감정을 통하여 변경 등기 또는 취소 신고하고 기타 관련기관(공상관리국, 세무국 등)에 통보

4. 기술료 및 지급방식 결정

□ 기술료 산정 요소

- 기술개발 요소 : 연구원의 지적 능력과 기술의 독창성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비용 산정은 곤란하지만 재료비, 설비비, 연구원 임금, 업무추진비, 컨설팅비, 훈련비 등을 포함
- 기술이전요소 : 기술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설계자료, 도면, 설명서 등의 기술자료비와 광고, 공증비, 우송료 등의 기

술교역비

- 기술서비스비 : 상품제공과는 달리 전파, 학습, 숙련 삼단계의 체계적인 기술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략 총 기술료의 25% 수준으로 결정. 이는 설비의 설치 및 시험, 교육, 시장개척, 생산, 생산라인 정상화 지도를 포함
- 기회비용 :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제공측이 잃을 수 있는 효용

□ 기술료 지급방법 선택

- 양측이 합의한 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수차에 나누어 분할 지급하는 일시불(lump sum) 방식, 기술도입측이 향유하는 경제적 효용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로열티(royalty) 방식,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혼합방식 중 선택

<표 4> 기술료 지급방식 비교

구분	일시불 방식	로열티지급방식	혼합방식
비용부담	비용부담 가장 저렴	비용부담이 가장 큼	일시불 및 로열티 지급방식을 중간으로 가장 일반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후 위험은 기술도입측이 부담 · 기술이전이 단기간 내에 가능한 경우 · 첨단기술이 아니며 지속적인 기술지도가 불필요한 경우 · 기술도입측의 자금이 풍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는 발생한 경제적 효용에 비례하여 지급 · 경제적 효용이 발생하는 계약 전 기간동안 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제공측은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비용중 일정부분을 입문비의 형식으로 조 기회수 가능 ·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노하우의 노출에 대해 계약체결후 즉시 보상

자료 : 필자작성

□ 로열티(Royalty) 산정

- 국제 기술거래의 LSLP(Licensors' Share on Licensee's Profit) 원칙에 의거 기술 가격은 기술을 도입하는 측의 수입과 이윤 기준
 - 기술도입측의 이익중 기술제공측의 공헌이익 × (상품 1단위의 판매이윤/상품 1단위의 매출가격) 또는 (기술료 지급액/상품순매출액) × 100% 중 채택

<표 3> 국제 기술거래에서의 통상적인 로열티 수준

구분	공제비율	비고
의약기술	총매출의 10~15%	산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 공업기술은 3~4%, 첨단기술은 5~6% 수준
정보처리기술	총매출의 3~5%	
기차 등 차량제조기술	총매출의 10~15%	
일상소비품 관련기술	총매출의 2%	
제지 및 목재업 관련기술	총매출의 4~6%	
석유화학	총매출의 1%	
자동차제조기술	총매출의 0.5~5%	

자료 : www.hfst.gov.cn

□ 기술료 수취와 관련한 세금 및 회계규정

- 기술료 수입에 대한 소득세 부과기준
 - 10만 위안 이하의 기술료 수입은 소득세를 면제하며 면제된 소득세는 전액 회사에 유보. 특히, 대학, 대학원, 과학 연구기관, 기타 전민소유제사업체가 수취한 기술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며 면제된 소득세는 전액 회사에 유보하여 연구개발비로 사용
 - 개인의 기술료 수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소득세 징수
- 기술료의 회계처리
 - 일시지급(Lump sum) 방식으로 수취하였거나 선납금(入門費 또는 初付費)은 관리비로 처리하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기표 가능
 - 로열티(Royalty)는 특별 회계과목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 매출액 증가분이나 이윤의 일정비율을 가정하여 산정한 로열티의 타당성 여부 검사 가능
 - 총 기술료 수입의 5~10%는 해당 기술 개발사원에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회사 전체의 상여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5. 기술 출자

□ 기술출자의 자본인정 범위

- 총 납입자본금의 20% 이내이나 단, 첨단기술 출자는 납입자본금의

35%이내

- ※ 최근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 및 도입 촉진을 위하여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등 중점 개발지역에 소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출자의 자본인정 범위를 10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상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의 필요

□ 첨단 기술출자의 요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기술이나 회사가 생산하는 주력 상품과 관련한 핵심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성급 과학기술관리부문이 별도로 인정한 기술만이 첨단 기술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자자는 제 3자에 대한 해당기술의 재산권 보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첨단기술 종류

; 마이크로 전자과학과 전자정보기술, 우주 및 항공관련 기술, 광전자 및 광·기계·전기 일체화 기술, 생명과학 및 유전공학, 신소재 관련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생태 및 환경과학, 지구 및 해양과학기술, 기초물질 및 복제기술, 의약 및 생물의학 기술

□ 기술출자 절차

- ① 기술 권리상태, 사용권의 양도 및 실시효과를 상세히 기술한 기술출자신청서, ② 특허증서, 소프트웨어 등기증서, (식물)신품종등기증서, 특허권이전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등 기술사용권에 대한 권리 증명서류, ③ 해당기술을 활용한 생산계획 및 사업계획서, ④ 기술가치 평가보고 및 확인서를 구비하여 과학기술관리부에 기술출자 신청
- 과학기술관리부의 심사결과(기술내용, 출자금액)를 정관에 반영하여 공상행정국에 설립 또는 변경 등기
- 출자자는 기술소유권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기술훈련 등 기술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회계사는 기술이전 여부를 감사하여 험자보고(驗資報告) 발행

6. 기술계약 분쟁의 중재

□ 중재요건

-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존재하거나 양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 따라서 기술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송에 앞서 중재를 원한다면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재절차

- 전문 기술계약 중재기관앞 중재 신청
 - 중재기관은 소재지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합의하에 선택 가능
- ※ 기술계약 분쟁의 중재 전문기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성급 이상 기술행정관리부문, 성도, 국무원이 비준한 시, 계획단열시 및 경제특구의 과학기술행정관리부문, 전국과학기술사회단체나 공업협회 등이 정부가 정한 기술계약 중재원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의 중재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설립 가능. 정부의 기술계약 중재원 자격요건은 해당부문 대학 전공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과학 또는 법률업무 종사 경험 필요
- 중재기관은 신청서 수리후 분쟁의 기술계약 관련 여부와 분쟁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수리서와 질문지 송부
- 분쟁 당사자는 중재신청 수리통지와 함께 중재기관이 발송하는 질문서를 작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15일 이내에 중재기관에 제출
- 중재원은 분쟁 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한명은 중재기관에서 자체 결정, 분쟁 금액이 적은 경우나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중재원이 심사 진행
- 중재기관은 심리 종결 후 30일내에 분쟁사실과 사유, 법률근거, 판결내용, 중재비의 부담, 판결의 이행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
- ※ 당사자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판결이 가능하나 판결내용의 이행은 법적 강제성이 없음

연구원 이지연(☎3779-6650)

E-mail : jeyi@koreaexim.go.kr